

▶ 특별강연 - II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정착을 위한 과제

이 태 근

흫살림

새로운 체계정비를 모색해야 할 때

흫살림은 2002년 1월 31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민간 인증기관이 되었다. 지금은 3년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를 거듭하여 인증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특히 2004년도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 장비를 갖추고 공인분석기관으로 지정되어 민간인증기관의 자립적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3년째 인증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인증 제도와 함께 흫살림의 인증시스템도 점검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인증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시작한 지난 2년 여 동안의 인증시스템을 점검하고 흫살림인증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갈 준비해야 할 때인 것이다.

현재 흫살림인증을 받은 농가는 모두 1,349농가에 달한다. (2004년 1분기) 이 중 유기인증(전환기포함) 농가는 모두 814농가인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유기인증농가의 27%에 달한다. 실제 이들 농가는 대부분 인증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인증 심사를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체계가 잡혀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1. 흫살림인증 제도 정착을 위한 단계별 추진 내용

| 기 간 | 단 계 별 | 추 진 내 용 |
|-------------|---------|-----------------------------------|
| 2002년~2003년 | 1. 도입단계 | 인증기관지정 인증심사 |
| 2004년~2005년 | 2. 보완단계 | 평가, 학습, 시스템재구성, IOAS 승인프로그램 심사 |
| 2006~ | 3. 정착단계 | IOAS 인증기관 승인 |

최근 식품안전성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거리로 부각되고, 웰빙(well-being)열풍이 계속되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확대·발전시키고 농업정책을 친환경농업중

심으로 이끌어가는 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기회를 맞았을 때 인증제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친환경농업 발전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회가 위기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확대지향적 정책에 휩쓸려 친환경농업 시장의 질서를 잡아나가는 인증제도를 적절하게 정비하지 않으면 그동안 성심껏 친환경농업의 기틀을 만들어온 유기농업 실천농가들 마저 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이제 진지하게 그동안의 인증체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표 2. IOAS 승인 인증기관 심사계획안

| 일 정 | 소요기간 | 추진일정 |
|---|-----------------|------------------|
| IOAS, IFOAM에 대한 기본 규정 학습 | 5개월 | 2004.4.~2004.8. |
| ↓ | | |
| IOAS 승인기준에 따른 내부평가 | 3개월 | 2004.9.~2004.11. |
| ↓ | | |
| 내부평가에 따른 자체 보완방안 도출 | 1개월 | 2004.12. |
| ↓ | | |
| 자체 보완과 재평가 | 3개월 | 2005.1.~2005.3. |
| ↓ | | |
| IOAS 본격 접촉과 지원시도 | 2개월 | 2005.4.~2005.5. |
| ↓ | | |
| 완전한 지원서류와 비용 지불 (Complete application form & submit fee) | 본 심사 기간 (1년) | 2005.6.~ |
| ↓ | | |
| 기본적 서류 확인 (Initial document check) | | |
| ↓ | | |
| 시간계획에 대한 동의 (Agree timetable) | | |
| ↓ | | |
| IOAS가 완전한 서류검토를 실시 (IOAS perform full document review) | | |
| ↓ | | |
| 조정활동기간 (Period of corrective actions) | | |
| ↓ | | |
| 평가방문 (Evaluation visit) | | |
| ↓ | | |
| 조정활동기간 (Period of corrective actions) | | |
| ↓ | | |
| 승인결정 (Accreditation decision) | | ~2006.5. |
| ↓ | | |
| 연간감시 (Annual surveillance) | | |
| ↓ | | |
| 재평가 (Reevaluation) | | |

인증제도 발전을 위한 해결과제

2001년 7월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되고 2003년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인증제도가 다소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몇 가지 기술적인 조항만 바꾼다고해서 제도가 발전할 수는 없다. 지금은 양적인 개선이 아니라 질적인 도약을 이끌어 내야 할 때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가칭)유기식품법 제정이다. 1차생산물 즉 농산물에 대해 아무리 철저한 인증절차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가공품에 대한 관리제도가 허술하다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떠맡게 될 것이다. 그리고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져 있는 유기식품관리는 하나의 법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두 번째 과제는 수입 유기농축산물과 수입유기식품의 관리 체계를 세우는 일이다. 국내 농산물의 경우 정부와 민간단체가 같이 인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수입유기농산물의 경우만 민간 인증기관에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간단체들은 인증제도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내인증까지 그만두라고 수년간 주장해 오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내 인증은 계속하면서 수입농산물 인증은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위해 민간인증기관에 전가시키고 있다. 최근 수입유기쇠고기 인증을 민간인증기관을 통해 급조하려는 움직임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기축산인증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국의 항의를 무마하려고 민간인증기관에게 수입축산물 인증을 맡기려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인증을 하려면 국내든 국외든 가리지 말고 모두 하든지 아니면 책임회피를 위해 민간인증기관을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인증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 차라리 수입농축산물 인증을 정부가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세 번째 과제는 완전한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정부인증이 지속되는 한 민간인증기관은 발전할 수 없다. 생산자는 인증비용과 절차, 기준 등의 측면에서 심사받기가 쉬운 쪽, 즉 정부인증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민간인증에 대한 특별한 프리미엄이 없는 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기피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네 번째 과제는 유기농업 농자재 관리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영농자재는 유기농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허용자재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채 수입산 농자재나 유전자조작된 원료로 한 농자재를 이용하는 농가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생산자가 안전한 자재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주며 판매원의 왜곡된 정보를 의심하지 않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일이 빈번히 생기고 있다. 이것은 결국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다.

다섯 번째 과제는 축분비료 사용기준을 코덱스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우리의 현실에 맞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유기축산 인증을 받은 농가가 없으나 많은 농가가 순환·자급형 축산으로 경종과 축산이 연계된 에너지 순환을 실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측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현재의 전환유기축산 인증기준 이상의 조건으로 사육된 가축의 축분뇨만을 허용하기로 정해놓은 상태이다.

이것은 일반유기질 비료의 허용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이미 경종과 축산이 연결되어 있는 순환 고리를 끊게 만드는 작용을 할 것이다. 더구나 실천하기 어려운 기준을 세워두고 지키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제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축분비료 사용기준을 재검토하고 원칙과 현실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섯 번째 과제는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문제이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동안 가격이 약 3배정도로 뛰게 되고 그 과정도 추적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생산자가 아무리 깨끗한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유통과정에서 일어나는 운반, 소포장, 인증표시부착 등의 일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이나 생산자가 개입하기 어려우므로 투명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최근 매일경제신문 기사(7월21일)에 따르면 모단체가 친환경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약67%의 마진을 남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통업자도 인증이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의 인증제도가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아 본 것이다. 이것 외에도 친환경직불금 인상문제, 인증기관지정 절차와 기준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혹살림인증에 대한 자부심을

최근에 지정된 케이앤티(K&T)라는 인증기관을 포함해서 민간인증기관이 모두 7개가 지정되었다. 또 화학농약이나 화학비료를 만드는 대기업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얼마 전 MBC 뉴스에서는 인증기관이 난립하여 소비자가 선택하는데 혼란을 준다는 보도를 하였다.

민간인증기관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인증기관마다 여러 가지 개성을 보이고 있다. 수입유기농산물을 인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증기관이 있는가하면, 폐쇄적인 회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곳도 있다. 또 지자체와 연계가 되어 지역의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 심지어 화학비료 회사가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어 제대로 된 인증기관이 무엇인지 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만한 것 같다.

인증기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여야 할 것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이란 ‘민원’업무도 아니고, 매출을 늘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업’도 아니다. 인증이란 공식적으로 규정된 인증기관과 생산자와의 ‘계약’인 동시에 법과 사회가 허용한 ‘확인절차’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서로의 합의에 의해 맺어지는 거래 계약과 달리 법과 사회가 인정하는 객관적이고도 권위 있는 제도이다.

이것은 결국 생산자의 선진적이면서 바람직한 관리체계를 유도하여 생산자의 자립도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다. 그래서 민간인증에는 ‘운동’의 성격이 강하게 배어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정부의 인증이 계속되고 있지만 마땅히 민간인증으로 모두 이양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통해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 생산·유통·관리 체계를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인

증기관들 끼리 서로 경쟁하는 체계로 되고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인증하는 지에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이 달라질 것이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도 넓어 질 것이다.

현재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으로 되어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 지정 번호 | 인 증 기 관 | 인 증 범 위 | 비 고 |
|----------|------------------------|-------------------|-------------------------|
| 1 | 사단법인 흙살림 | 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 |
| 2 | 사단법인 돌나라한농복구회 | 유기, 전환기 | 수입유기농산물 인증 |
| 3 | 사단법인 양평환경농업21 추진위원회 | 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 양평군 관내 생산자만 인증 |
| 4 | 사단법인 국산콩가공협회 | 유기, 전환기, 무농약 | |
| 5 | 사단법인 한국유기농업협회 | 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 유기, 무농약, 저농약 각 1건 인증 |
| 6 | 주식회사 코약스 | 유기, 전환기 | 수입유기농산물 인증 |
| 7 | 주식회사 케이앤티 | 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 |

위 인증기관들 중 실제 인증실적은 흙살림과 양평환경농업21의 것이 대부분이다. 양평환경농업21은 양평군으로 지역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 외의 기관들은 인증실적이 거의 없거나 수입유기농산물을 인증하여 유지하고 있는 기관이다. 사실상 지금의 인증기관들끼리의 경쟁은 눈에 띄지 않으며 흙살림인증이 민간인증기관의 대표 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실제 친환경농업정책에 참여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인증체계를 갖출 수 있는 곳은 흙살림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지금의 양상은 정부인증과 흙살림인증의 경쟁체제라고 보여 진다. 정부 측은 모든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민간으로 이양할 것이라고 비공식적 발표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추진일정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정부인증과의 경쟁체제에서 흙살림인증이 정부인증과 차별화된 점을 생산자 스스로가 홍보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의 차별성을 스스로 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다른 인증기관이나 정부인증보다 까다로운 절차와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농산물이라는 것을 알리는 홍보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인증기관 간의 차별성, 정부인증과의 차별성에 따라 농산물 품질의 차별성이 결정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가장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은 ‘흙살림인증’ 농산물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흙살림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가장 어려운 인증심사과정을 통과할 만큼 품질이 보장되는 것이고 그 생산자는 대단히 수준 높은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산자 측은 획득한 인증서를 기반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인증제도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생산자의 참여로 인증제도의 발전을

2005년 1월 1일부터 공장형 축분 사용 금지 규정을 포함해서 대단히 까다로운 인증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육성법을 통해 유통업자 인증을 시행하고, 전환기유기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법개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제도이든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법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제도의 주인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흙살림이 제시하는 인증기준은 가장 원칙적이면서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흙살림인증의 원칙에 동의하고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생산시스템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인증을 받았다는 것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참 고 자 료>

훈살림인증 10가지 심사분야

1. 생산자

생산자 또는 그 조직이 갖추고 있는 체계와 이력, 투명성 따위를 심사합니다.

2. 입지조건

농장으로 오염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이웃한 곳에 관행농업을 하는 농장이 있거나, 급수원이 어디인지, 가까운 곳에 축사나 공장 따위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또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소각한 흔적이 있으면 인증이 안 됩니다.

3. 기록(생산이력)

영농일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지 검토합니다. 사용한 자재나 생산·출하량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농일지에 꼭 기록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자재사용내역 - 사용한 이유와 목적, 출처, 사용방법, 사용량, 자재 반·출입량
- ② 생산/출하량
- ③ 작업내역과 인원
- ④ 생육상황
- ⑤ 기타 - 각종 분석(검사) 결과, 수입/지출내역, 기록의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송장, 거래명세표 따위

4. 계획과 결산

제시한 생산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였는지, 세운 계획이 인증기준에 부합한지를 확인합니다. 또 연말에는 생산·출하량, 사용한 자재들에 대해 결산이 이루어지며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결산이 안 될 경우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자재

사용한 자재가 합당한지 확인합니다. 또 가지고 있는 모든 자재(관행농업용 자재도 포함)를 일일이 확인합니다. 자재 사용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원료와 제조과정에는 화학물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 ② 유전자조작(GMO)을 원료로 하면 안 됩니다.

- ③ ‘공장형축사’에서 나온 축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 ④ 위 세 가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 없이, 판매자나 타인의 권유를 믿고 사용하면 안 됩니다.
- ⑤ 허용하지 않는 자재의 용기나 포장지(농약병이나 비료포대 따위)가 농장 안에서 발견되면 그것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물

물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7. 흙

전환기간을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또 흙의 상태가 유기농업에 적합한지 검토합니다.

8. 농법

농사 방법에 대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① 종자 ② 육묘 ③ 윤작 ④ 혼작 ⑤ 제초 ⑥ 방제

9. 시설과 장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장비와 시설을 확인합니다. 특히 살포장비는 관행농업과 유기농업에 함께 사용하지 말고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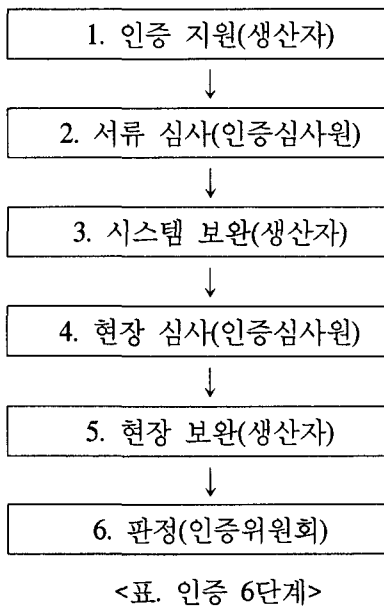
10. 수확 후 관리

수확하고 나서 선별, 포장, 입고, 출고, 운송 등의 과정은 관행농산물 또는 오염물질과 철저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생산과정 뿐만 아니라 수확 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하 전에는 반드시 안전성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참 고 자 료>

혹살림인증의 6단계

인증을 하는 과정은 크게 여섯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인증 기준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면 바로 <인증불가> 판정을 내립니다.



1. 인증 지원

인증을 받으시려는 분은 정해진 지원서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하실 자료는 모두 두 가지인데, ‘지원서’와 ‘질문서’입니다. 지원서는 생산·행정관리자가 대표로 하나만 작성하시면 되고, 질문서는 한 사람씩 모두 쓰셔야 합니다. 지원수수료를 납부하셔야만 공식 접수가 됩니다.

2. 서류 심사

서류가 완전히 접수되면 서류를 일일이 검토합니다. ‘앞뒤 계산에 차이가 없는가?’, ‘계획한 생산량이 적당한가?’ 하는 기본적인 검토에서부터 ‘생산과정을 투명하게 보이고 있는가?’, ‘생산기술 수준이 어떤가?’, ‘위생관리나 오염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생산자의 농사체계(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3. 시스템 보완

검토해 본 후에 지원자에게 뭔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도록 요청합니다.

4. 현장 심사

생산자가 스스로 농사체계를 보완하고 나면 현장 심사를 합니다. 농장 경계가 뚜렷한지, 주변에 특별한 오염원이 없는지를 조사합니다. 또 생산자와 인터뷰를 통해 생산자의 자질이나 관리능력을 평가합니다. 필요하다면 서류와 진술 내용에 대해 추적조사도 실시합니다. 분석에 필요한 시료는 이때에 채취하는데, 필요에 따라 흙 검사, 물 검사, 중금속 검사, 농약잔류 검사, GMO 검사, 미생물 검사 같은 다양한 검사를 합니다. 만약 분석을 하게 되면 분석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5. 현장 보완

현장조사를 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발견하면 이것에 대해 보완하도록 요청합니다.

6. 판정

이렇게 다섯 단계를 거치면 인증심사원은 농장의 모든 조건과 생산이력 그리고 심사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인증위원회는 토양, 식품, 유통, 농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증은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결정되는데, 만장일치로 합격판정을 내립니다. 만약 인증이 되면 사후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